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나4205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임선영, 홍승재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성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호원

변 론 종 결 2021. 12. 9.

판 결 선 고 2022. 1. 20.

제1 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가단13649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8. 6. 18.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와 2018. 6. 20. 접수 제253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1) J 주식회사의 C에 대한 신용카드 대출금채권을 전전 양수한 원고는, 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8가소9653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5. 30. ‘C는 원고에게 9,749,328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5. 4.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8. 7. 2.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하고, 그 채권 또는 채무를 ‘이 사건 양수금채권’ 또는 ‘이 사건 양수금채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① 2018. 5. 2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차전3291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2018. 6. 19. 위 신청을 취하하였고, ② 2018.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차전1457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2018. 8. 23. 그 신청이 각하되었으며, ③ 2018. 8. 30. 인천지방법원 2018차전2295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날 ‘채무자(C)는 채권자(원고)에게 9,749,328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5. 4.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8. 11 27. 확정되었다.

나. C의 부친인 N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상속분 3/9), 자녀인 C 및 O, P(상속분 각 2/9)을 두고 2018. 3. 4.

사망하였다.

다. 망 N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와 C, O, P은 2018. 6. 18.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와 2018. 6. 20. 접수 제25375호로 2018. 3. 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은 2008. 7. 2. 확정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8. 31.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원고가 2018. 8.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확정일인 2008. 7. 2.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임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원고는 위 2008. 7. 2.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5. 29.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차전21916호)을 신청하였다가 2018. 6. 19. 위 신청을 취하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8. 8. 30. 다시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2018차전2295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날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그 지급명령이 2018. 11 27.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위 2018. 5. 29.에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C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C가 자신의 상속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 피고는, C가 상속을 포기하였고,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가 상속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2),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2) 또한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양수금채무를 비롯한 C의 채무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망 N과 피고가 일구어 온 재산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그 대출금채무도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분할협약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와 C가 모녀관계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3),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2/9지분에 관하여 2018. 6. 18.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원, 판사 신진화, 판사 이주현

부 동 산 의 표 시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 143.8㎡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멘트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56.46㎡

지하실 5.12㎡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와 관할, 소유)

1) 원고는 등기부에 기재된 분할협의일인 '2018. 3. 4.'로 기재하였으나(소 제기시 실제 분할협의일을 알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을 제2호증(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분할협의일이 '2018. 6. 18.'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2018. 6. 18.자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행하여 판단한다.

2) 피고 소송대리인도 1차 변론기일에서 'C가 상속포기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피고는 이 부분 주장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로, 변론종결 이후에 망 N의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